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에 위하여 전담여행사를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 전담여행사 지정에 관한 세부 요건, 전담여행사의 지정·갱신·지정취소 및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전담여행사 지정 요건, 유효기간, 갱신 등 세부 내용을 규정 (안 제21조의2 제정)
- 나. 단체관광객 무단이탈 발생, 단체 진행결과 보고 누락 등의 위반사항 발생 시, 전담여행사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제재 조항을 규정(안 제21조의3 제정)
- 다. 무단이탈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규정 (안 별표00 제정)
- 라.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안 별표00 제정)
- 마. 전담여행사 지정서 서식 규정 (안 별지 제00호 서식 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예정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전담여행사 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여행업을 등록하였을 것
2. 재정 건전성이 단체관광객의 유치에 적합한 수준으로 인정될 것.
3. 여행상품의 기획 능력이 단체관광객의 유치에 적합한 수준으로 인정될 것.
4.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것
5. 최근 3년 이내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00호서식의 전담여행사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는 우리나라와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지정 효과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한 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별지 제00호서식의 전담여행사 지정서를 새로 내주어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전담여행사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 갱신 절차, 관리·감독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필요한 경우 우리나라와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21조의3(전담여행사 제재) ① 법 제12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단체관광객 중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전담여행사에 대하여 무단이탈자 발생 정도에 따라 단체관광객 유치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 무단이탈에 따른 처분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00으로 정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1. 전담여행사가 무단이탈자 발생 사실, 단체 진행결과보고, 전담여행사 변경사항 보고를 누락 또는 허위로 전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2.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등 단일화하여 수익에 대한 합리성이 낮은 경우
3. 여행업 공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단, 여행업 공정질서 문란의 종류와 유형은 고시로 정한다.
4. 1호에서 3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 00와 같다.

별표 00 무단이탈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00]

무단이탈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제21조의3 1항 관련)

1. 처분기준 및 산출방법

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계기준

- 1) 무단이탈 발생 관련 분기별 평균 이탈률을 산출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제재를 가한다.
- 2) 단, 이탈률 집계는 법무부가 제공하는 이탈자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 산출식 : 분기별 이탈자 ÷ 분기별 유치인원 * 출국일 기준으로 산출

2. 행정처분 기준

구분	처분 기준	제재 사항
분기별 평균이탈률	3% 미만	시정명령
	3 - 4% 미만	1개월간 업무정지
	4 - 5% 미만	2개월간 업무정지
	5% 이상	지정취소

3. 특례규정

가. 분기별 총 무단이탈자 수가 3명 이내이고, 무단이탈 발생 사실을 모두 법무부 및 문체부 전자관리시스템에 신고 및 보고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그러나 무단이탈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나. 최근 1년간 분기별 평균이탈률에 따라 4회 연속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전담여행사는 1개월간 업무를 정지한다. 단, 동 1년간 총 무단이탈자 수가 12명 이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00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00]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제21조의3 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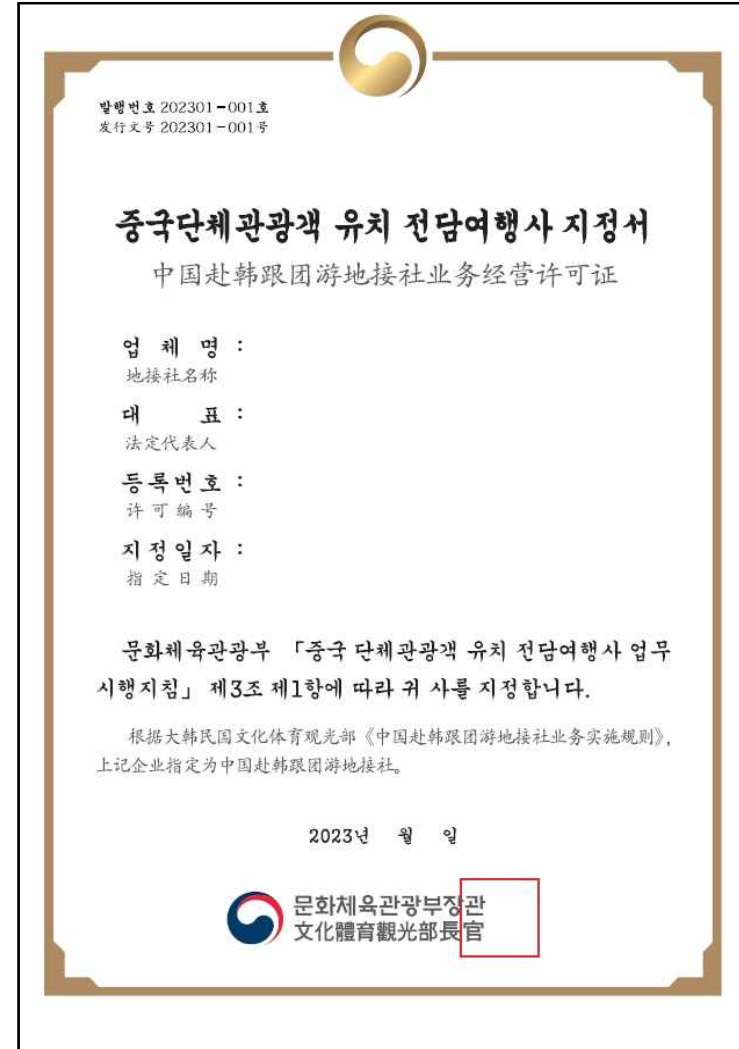
1.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광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관 련 조 항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이후	-
가. 전담여행사가 무단이탈자 발생 사실 또는 단체진행 결과보고 또는 제5조 제1항에 의한 변경사항 보고를 누락 또는 허위로 전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제5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9조의2	시정 명령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개월	-
나.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등 단일화하여 수익에 대한 합리성이 낮은 경우	제9조 제6항	시정 명령	업무 정지 1개월	지정 취소	-
다. 제9조 제6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제9조 제6항	1건	2~3건	4~5건	6건 이상
		시정 명령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지정 취소

[별지 제00 서식- 제21조의2 (전담여행사 지정) ③항 지정서 관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5. <u>최근 3년 이내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u>
<신 설>	③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00호서식의 전담여행사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는 우리나라와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별로 구분하여야 한다.</u>
<신 설>	④ <u>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u>
<신 설>	⑤ <u>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지정 효과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u>
<신 설>	⑥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한 자가</u>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별지 제00호서식의 전담여행사 지정서를 새로 내주어야 한다.
<신 설>	⑦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전담여행사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u>
<신 설>	⑧ <u>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 갱신 절차, 관리·감독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필요한 경우 우리나라와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u>
제21조의3(전담여행사 제재) <신 설>	제21조의3(전담여행사 제재) ① <u>법 제12조의3제3항제3호에</u>

현행	개정안
<p><신설></p>	<p>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은 단체관광객 중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전담여행사에 대하여 무단이탈자 발생 정도에 따라 단체관광객 유치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 무단이탈에 따른 처분 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00으로 정한다.</p> <p>② 법 제12조의3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p> <p>1. 전담여행사가 무단이탈자 발생 사실, 단체 진행결과보고, 전담여행사 변경사항 보고를 누락 또는 허위로 전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p> <p>2.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p>

현행	개정안
	<p>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등 단일화하여 수익에 대한 합리성이 낮은 경우</p> <p>3. 여행업 공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여행업 공정질서 문란의 종류와 유형은 고시로 정한다.</p> <p>4. 1호에서 3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 00와 같다.</p>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연 락 처	(044) 203 - 2829